

이 내용은 지난 '96. 12에 한일기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내한한 직업성 질병분야 전문가인 쿠마시로 마사하루(神代雅晴, 산업의과대학 산업생태과학연구소 인간공학부)교수의 “직업성 스트레스와 그 실태”에 관한 세미나 중 “고령자가 일하기 편한 쾌적한 직장 만들기”라는 부분으로 개선사례를 중심으로 3~4편으로 나누어 게재하고자 한다.

근무시간에 관한 개선

고령기가 되면, 사람에 따라서 그 취업수요도 다양해집니다.

고연령자의 능력을 살리고, 일하기 편한 직장환경에서 오래 근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무형태면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생활이나 체력을 고려하여 고연령자가 무리없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워크쉐어링(worksharing)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60대를 비롯한 고연령자들이 일하기 편한 상태로 오래도록 건강하게 근무케 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에 관한 배치나 제도면에서의 다양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 중심적인 과제중의 하나가 근로시간입니다. 소위 상근 fulltime 근무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고연령자의 희망에 따라 근무일수나 1일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에서 연구하는 것이 됩니다. 시간단축은 비단 고연령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에 있어서 시류의 긴요한 과제이므로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대책중의 하나가 worksharing입니다. 원래 이 발상은 직무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임금도 그에 직결되어 결정되어지는 구미에서 실업대책적인 효과를 기대하여 등장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하에서는 시간단축 추진, 정년퇴직자 등의 취업과 여가생활의 필요성, 건강면에서의 배려나 원만한 은퇴에의 이행 등을 고려한 워크쉐어링 제도의 전개가 기대됩니다. 특히 24시간 조업을 필요로 하는 업종에서 교대제나 작업그룹의 편성을 연구하여 고연령자를 투입하는 대책이 주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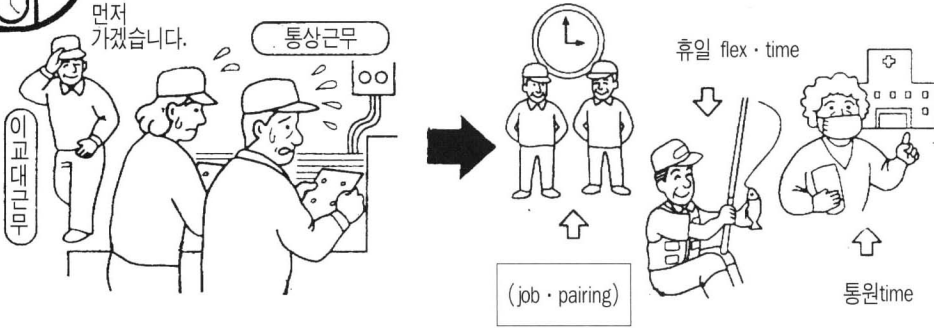
또, 단기간 취업(근무시간이나 근무요일이나 일수)을 희망하는 고연령 구직자 2명 내지 3명을 팀으로 구성하여 하나의 직무에 연계하는 job pairing방식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작업순서나 방법의 표준화를 확립하는 동시에, 작업상의 전달철저, 작업팀 멤버의 상호협력과 그 성립기반이 되는 공정한 처우라는 조건을 정비하는 등, 다양한 관리상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개선기업 사례

7종류의 근무형태로 개선.



개 선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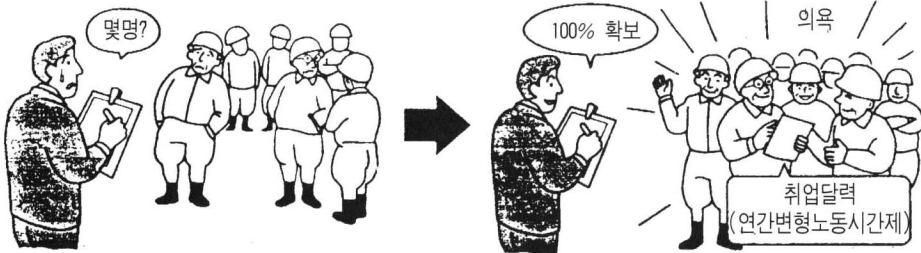
종래의 근무형태는 통상적 근무와 2교대근무의 두가지 형태였습니다. 지역성 문제도 안고있기 때문에 젊은 노동력 확보가 곤란하여, 고연령자나 젊은 주부들이 더욱더 일하기 편한 환경으로 만들기위해 근무를 유연성있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개 선 후

그를 위해 다양한 근무가 가능해지도록 half time 근무를 희망하는 2인 1조의 「job pairing」 이외에 7종류의 근무형태를 설정하였습니다. 휴일에 대체근무 할수 있도록 「휴일 플렉스타임」, 그리고 병원에 통원하는 경우는 휴가나 결근으로 취급하는 대신에 「통원타임」을 마련해서 그 시간을 다른 날에 근무하면 되는 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또 임금에 대해서도 「연봉임금」이나 본인이 희망하는 시간제근무에 의한 「시간급」중의 하나를 선택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간 변형근무 시간제로 업무의욕 개선.



개 선 전

전 사원 중 약 160명이 현장스텝(그중 55세 이상이 약반수)으로 일하는데, 이중 약 80명이 연간고용자이고 약 50명이 계절공으로서 각각 임금제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도목, 포장공사가 주된 업무로, 9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이 비수기였기 때문에 일일 근로시간이나 출근일이 일정하지 않고, 이에 따라 임금이 변동되어 생활이 불안정하였기 때문에 현장스텝사이에는 일할 의욕이 없고 기업에서도 현장스텝에 대해 당일야야 비로소 몇명이 출근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요원 관리 상태였습니다.

개 선 후

여기서, 업무 형태에 맞는 「1년간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현장스텝을 포함한 전사원에게 연간업무와 회사의 취업계획을 적어 놓은 「취업달력」을 배부하였습니다. 이 「1년간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으로 1주당 평균근로시간은 38.7시간, 1일은 7시간반 근무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또 취업달력의 배부와 함께 현장스텝의 연간고용자 급여를 그때까지의 「일급제」에서 「일급월급제」로 개정함으로써 매월 임금의 대폭적인 기복이 없어져 생활에 안정감이 많이 생기게 되어, 현장스텝의 업무에 대한 의욕이 높아졌고, 당일 야야만 파악이 가능했던 현장요원의 확보가 100% 가능해졌으며, 안정된 노무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